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6. 9(금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4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학교폭력 범위를 넓혀 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폭넓게 보호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수립·추진을 위하여 ‘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’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여 금천구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과 구민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, 학교폭력 신고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내지 제5조).
- 다.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다방면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

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바.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마련을 위해 기관 간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무 등을 규정함(안 제9조 내지 15조).

사.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의 위탁 설치 및 운영,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
아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그에 따른 자료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함(안 제18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조 및 제4조, 제15조 등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61조 등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6. 1. ~ 6. 7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조례에서 미비점과 추가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금천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해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- 2)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다방면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3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68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·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3. 21.]

제11조의3(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) ① 교육부장관, 교육감, 지역 교육장,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2.>

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, 2021. 3. 2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·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(학교폭력의 개념·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)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학교폭력의 신고의무)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8.>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5. 8., 2019. 8. 20.>

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. 다만,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 5. 8., 2012. 1. 26., 2019. 8. 20.>

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2. 3. 21.>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3. 4. 19.] [법률 제18993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61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·제24조제1항·제26조제1항·제29조제1항·제31조·제39조·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63호, 2021. 9. 24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